위 세 단어는 법률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법률에서는 각각 그 용도를 명확히 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mark>양도</mark>는 소유권자체를 완전히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받은사람이 마음대로 하는거죠.

위탁은 <u>위탁판매와 같이 나의 것을 중간 매매상에게 판매만을 맡기는 것입니다.</u> 위탁받은사람은 주어진 범위내에서 권리를 행사합니다.

신탁은 맡기는 사람과 받은사람 사이에서는 맡기는 사람이 소유권을 갖고 일부권한을 위임하지만 제3자에 는 신탁받은사람이 완전한 소유자로 취급받습니다. 위탁에비해 많은 권한을 넘깁니다. 믿고 맡기는겁니다.

주로 '소유권'과 관련되어 나오는 내용이어서 소유권이라 말했으나 '권한'이란 의미로 바꿔서생각하시면 될거같습니다. 소유권자가 전권(全權)을 갖는 사람이죠.

용어로 봤을때 신탁은 위탁과 유사합니다. 양도는 이들과는 딴판이죠.

홉스, 로크의 정치사상과 관련된 말은 모두 번역된 말입니다. 법을 공부하면 많이 나옵니다만 간혹 번역 자가 용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기도 하는것 같습니다.

내용으로 미루어 봤을때 절대군주제를 옹호한 홉스는 양도, 제한군주제를 옹호한 로크는 신탁, 직접민주 제를 옹호한 루소는 위탁이라는 용어와 어울리는것 같습니다.

유의어/반의어



출처: 낱말 - 유의어/반의어 더보기 >